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자동차 등록번호(등록기호)	[]건설기계	[]항공기 []소형선박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설정 금액	[]채권액 []채권최고액 []담보가격 원		변제기
이자	원	이자 발생 시기	이자 지급 시기

등록 원인

대위 원인

조건 또는 약정

종전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설정등록 신청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대상 건설기계 이외의 공동저당 대상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2대 이상의 건설기계에 대해 공동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